실전 토론 개요서 (A03) 분반				
논제	인공지능의 예술적 청의성의 저작권을 인정하자			
팀 (입장과 역할)	(7)조 입장: 찬성측	구분	역할	학과 이름
		팀장	임관영	식품생명화학공학부
		팀원	임예원 박진한 장준혁	생명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용어 정의				
핵심 논거	1.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도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의도가 들어가 예술작품으로 인정된다. 2.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독창성(창작성)이 인정된다. 3. 창작자의 노력과 창의성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 4.저작권을 인정해야 예술작품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사례에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